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56
----------	-----

발의연월일 : 2012. 11. 12.

발 의 자 : 이효상의원 외 2명

1. 제정이유

-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안 제5조)
- 라.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기능(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중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우리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 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6. 해당학교 선, 후배간의 교류의 장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날 행사
7. 관내 학교 학생과의 정기적 자유대화의 시간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4. 학교장
5.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대표
6.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5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제출자 : 2012. 11. 12(월) · 이효상의원 외 2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11. 13(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11. 30(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상의원)

-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안 제5조)
- 라.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기능(안 제6조)

5.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관련법령검토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주요내용 : 기 배부된 조례안 참조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 ▶ 2012. 11. 13 ~ 11. 19.(7일간)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타자치단체사례

- ▶ 울산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조례 미제정
- ▶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검토의견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교육장은 위에서 서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위 법률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비용 대비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장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사유 : 조례안의 실효성을 위해 조문 내용 수정과 기 구성된 단체에 대한 경과 조치사항 추가(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략) 1. ~5. (생략) 6. <u>해당학교 선, 후배간의 교류의 장을 위한 교복 물려주기날 행사</u> 7. 관내 학교 <u>학생과의 정기적</u> 자유 대화의 시간 ③~④ (생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제정안과 같음) 1.~5. (제정안과 같음) 6. <삭제> 6. ----- <u>학생과의</u> ----- ----- ③~④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울산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협의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⑤ (생략) ⑥ <u>협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 으로 한다.</p>	<p>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 <u>울산광역시중구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u> ----- ② ----- <u>지역협의회</u> ----- ----- ----- ③~⑤ (제정안과 같음) ⑥ <u>지역협의회</u> ----- -----</p>
<p>제6조(협의회의 기능) <u>협의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p>	<p>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u>지역협의회</u>----- ----- 1.~2.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u>협의회</u>를 대표하고, <u>협의회</u>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③ (생략)</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지역협의회</u>-----, <u>지역협의회</u>----- ----- ②~③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회의 등) ①~③ (생략) ④ 위원장은 <u>협의회</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u>협의회</u>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회의 등)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 ----- <u>지역협의회</u> ----- ----- ----- <u>지역협의회</u> ----- -----</p>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 ----- -----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입기 중은 물론 입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 ----- ----- 지역협의회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울산광역시중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단체”란 정부 기관과 우리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 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울산광역시중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4. 학교장
5.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대표
6.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